보

2. 주요내용

-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1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나. 용어정비
 - 주입호스
-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2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2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배관 내압시험
-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1993.07.26. (2020.12.16.)	31-1984-10-0000038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인천어선안전 조업국송신소	해안국	주파수 변경 (주파수 증설)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980	수협인천3	변동사항 없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2182.0000 kHz	2K80H3EJN	2.8 kHz	30 W		
31-1984-10-0000038	2116.4000 kHz 2183.4000 kHz 2439.4000 kHz	2K80J3EJN	2.8 kHz	100 W	주파수 변경 (3장치)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따라 방송통신표준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